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3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회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가. 코로나 19 등 예상치 못한 감염병 확산으로 집합회의(본회의 및 위원회 등)가 정상적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격영상회의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의결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원격영상회의 및 원격 표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원격영상회의 및 원격출석·발언·표결, 원격표결방법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의2)
- 나.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본회의 원격영상회의를 준용함(안 제86조제2항)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회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28조와 제38조에 불구하고 발언과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원격영상회의를 하는 경우 제40조에 규정된 표결방법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제8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제11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u></p> <p><u>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28조와 제38조에 불구하고 발언과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u></p> <p><u>③ 원격영상회의를 하는 경우 제40조에 규정된 표결방법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u></p>
<p>제86조(준용규정) (생략)</p> <p>&lt;신 설&gt;</p>	<p>제86조(준용규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u>②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각각 본다.</u></p>